

도서 구입비 | 공연 티켓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신문 구독료 |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관련

안내서

I. 문화비 소득공제(도서·공연 등 소득공제) 개요	6
II. 기본 시행 방향	7
III. 주요 개념	8
IV. 업계·기관 시행 협조사항	
①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11
② 사업자의 행정적 조치	14
③ 홍보, 안내 관련	18
④ 사후관리 관련	20
⑤ 신용카드사, 결제 대행사 등 관련	22
[참고1] 사업자 신청·접수 요령 (서식 포함)	24
[참고2] '문화비 소득공제'적용 분야 범위	28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관련

질의답변

I.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관련 Q&A	38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40
III.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61
IV.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사 등 관련 Q&A	80
V. 개인 근로소득자(구매자, 소비자) 관련 Q&A	83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관련

안내서



1.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공연 등 소득공제) 개요

근거 법 및 주요내용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성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23.7.1. 시행)로 사용한 금액(이하 “문화비”)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300만 원 까지 추가한도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문화비는 추가로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한도)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구분	개정 내용(~2023년)	개정 내용(2023년~)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도서·공연사용분 <2018.7.1.시행></u> • <u>박물관·미술관사용분 <2019.7.1.시행></u> • <u>신문 구독료 사용분 <2021.1.1.시행></u> 에 대하여 공제율 3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도서·공연사용분 <2018.7.1.시행></u> • <u>박물관·미술관사용분 <2019.7.1.시행></u> • <u>신문 구독료 사용분 <2021.1.1.시행></u> • <u>영화 관람료 사용분 <2023.7.1.시행></u> 에 대하여 공제율 30% 적용
공제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도서 등 사용분) •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도서 등 사용분)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도서 등 사용분) •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도서 등 사용분)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문화비(도서 등) 사용분 (100만 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소득공제 각 한도 적용 (각 1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 시장+대중교통+ 문화비(도서 등) 사용분(통합 300만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적용 (300만 원)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의 경우 제도 시행 시기인 '23년 7월 1일 매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되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에 국제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23년 7월 1일 이전 매출분은 일반 소득공제로 적용)

II. 기본 시행 방향

시행 수반사항

- 근로소득자가 「귀속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문화비 상품 판매 관련 사업자로부터 문화비 자료의 전자적 수집,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 서비스 구현

기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자료수집 체계

- 기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소득공제 자료수집 체계*는 상품·용역 제공 사업자 중심으로 구축
 - * 상품(품목) 정보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특정 사업자의 특정 가맹점번호(단말기) 사용액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가맹점(단말기)에서의 사용금액 등 자료수집 → 국세청(여신협회, 신용카드사)등 전송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특징

-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 신문, 영화관람 상품(품목) 중심으로 문화비 적용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
- 이에 비해, 문화비 적용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
 - 특히, 사업자가 문화비 적용 상품과 적용 불가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복수 업종업태의 경우가 많음 (예: 도서+문구+음반,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문화상품, 신문+잡지, 영화표+팝콘 등)
- ⇒ 사업자의 동일한 가맹점번호(카드 결제 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에서 문화비 적용 상품뿐만 아니라 적용 불가 상품도 같이 판매·결제됨으로써 '문화비'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려움

추진 방향

- 따라서 문화비 적용 상품 및 적용 불가 상품의 구분이 가능한 사업자*의 등록을 통한 자료수집 등으로 소득공제 시행
 - * 온오프라인 다양한 사업자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카드 결제 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에서 문화비 매출만 발생(기술적 조치)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파악된 자
-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한 관련 사업자의 자료수집·제출 등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이 해당 분야 사업자 등록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
 - *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

Ⅲ. 주요 개념

사업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인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
 -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음(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이하 생략)
-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다. (생략)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居所(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 4. (생략)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단일 및 복합 사업자

- **(구분 기준)** 사업자의 전체 매출 중 문화비 적용 상품의 판매 비중에 따라 구분
- **(단일 사업자)**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전체 매출액 중 문화비 적용 상품의 매출이 100%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자
- **(복합 사업자)**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전제 매출액 중 문화비 적용 상품의 매출 이외 적용 불가 상품의 매출도 있는 사업자

◆ 복합 사업자인데 영세사업자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사업자로 봄

- (도서) 연 매출 3억 미만인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비치*) 중 도서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 (공연) 연 매출 7천 5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비치*)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 (박물관·미술관) 연 매출 7천 5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비치*)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 (신문) 연 매출 3억 미만인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비치*) 중 신문(중이 신문)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 소득세법 160조,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및 다목

◆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근거로 단일사업자 유형으로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 위 영세사업자는 단일사업자와 같이 기존 가맹점 추가, 분리 등 기술적 선행조치 없이 신청·접수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III. 주요 개념

온라인 사업자(판매업자)

-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 (예) 공연·영화 티켓 예매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방송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하는 경우 등
- **(개념)** 문화비 적용 상품 또는 적용 불가 상품을 결합하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회원사(위탁자)와 위 상품 판매와 관련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대행**
 - * 회원사(위탁자)는 수탁자(판매업자)에게 보통 판매 대행수수료 등을 지불
 - **(직접 판매)** 문화비 적용 상품을 매입하거나 해당 온라인 판매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수탁자)** 온라인 판매업자로서 위탁 사업자의 판매를 대행
 - **(위탁자)** 문화비 적용 상품 판매를 의뢰하는 자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 * (예) 인터넷, 모바일 웹/앱 사이트 오픈마켓 등
- **(개념)** 온라인상에 상품 등을 거래·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가상의 영업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판매자(입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자(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음)
 -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사이버몰에 입점한 개별 사업자 간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표 또는 결합 판매(문화비 적용 상품+적용 불가 상품)와 관련한 중개 계약을 체결
- **(입점 사업자*)** 문화비 적용 상품을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
 -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서, 자신의 매장·쇼핑몰 등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타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입점 사업자로 구분
 - * (예) ○○홈쇼핑 회사에서는 자체 홈쇼핑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만, ○마켓 (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기도 함

Ⅳ. 업계·기관 시행 협조 사항

①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 (조치할 사항)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번호의 카드 결제 단말기(현금영수증 포함)에서 문화비 적용 상품의 매출만 발생하도록 할 것
 - 해당 사업자 유형별 '조치할 사항'을 참조하여 기술적 조치

① 오프라인 판매업자

- 공연장, 공연기획사 및 공연단체, 서점, 박물관·미술관, 전시기획사, 신문사 또는 신문 지국, 영화 상영관 등 오프라인 매장(시설)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영화표만 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문화비 적용 상품과 적용 불가 상품을 함께 판매(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또는 판매중개)를 병행하는 사업자(예: 영풍문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티켓 등)는 ①과 ② ~ ③에서 정한 세부사항 참조

사업자 유형	조치 사항
단일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결제 단말기를 보유 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 전용 카드 결제 단말기 추가, 분리 등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매장(시설)이 본사 등과 동일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해 매장(시설)의 결제, 매출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하도록 관리 요청 ※ 거래하고 있는 결제 중개사(VAN사)에 현금영수증도 문화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처리되도록 요청 • 카드 결제 단말기 미보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결제 단말기 미보유 시 토스페이먼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등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 납부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복합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결제 단말기를 보유 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사(또는 결제 중개사인 VAN사)에 기존 매장(시설)의 가맹점번호 이외 문화비 매출만 발생하도록 소득공제 전용 카드 결제 단말기 추가, 가맹점번호 추가/분리 요청 - 카드 결제 단말기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거래하고 있는 결제 중개사(VAN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화비 소득공제용'과 '일반 결제용'을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요청 • 카드 결제 단말기 미보유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발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 납부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Ⅳ. 업계·기관 시행 협조 사항

② 온라인 판매업자

- ① 사업자의 온라인(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 통신, 방송)사이트에서 문화비 적용 상품만을 판매(단일 사업자), ②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문화비 적용 상품** 이외 적용 불가 상품을 함께 판매(복합 사업자)
 - (도서 예) △**단일**(도서만 판매하는 서점), △**복합**(예스24 도서,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등)
 - (공연티켓 예) △**단일**(문화N티켓, 대학로티켓닷컴 등), △**복합**(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티켓링크, 하나투어 티켓, 클럽서비스, 멜론, 나눔티켓, 세종문화회관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예) △**단일**(입장권만 판매하는 박물관·미술관), △**복합**(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티켓링크, 하나투어 티켓, 클럽서비스 등)
 - (신문 구독료 예) △**단일**(신문 구독료만 판매하는 신문사, 신문 지국 등), △**복합**(신문 구독료 이외 타 상품 함께 판매)
 - (영화 관람료 예) △**단일**(영화표만 판매하는 영화상영관), △**복합**(영화표 외 팝콘 등 식음료도 같이 판매하는 영화 상영관(멀티플렉스 등))

사업자 유형	조치 사항
단일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결제 대행사(PG사)의 결제 대행 서비스(대표 가맹점번호¹⁾)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반드시 해당 PG 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 매출이 발생하도록 요청하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접수완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PG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임을 통보할 것 - (PG사) 신용카드사에 별도 개설한 PG사의 대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위 사업자(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영화 판매 사이트 등)를 등록/연계하는 등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접수완료)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조치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온라인 결제 대행사(PG사)에 결제 대행 서비스(개별(단독)가맹점번호²⁾)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PG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임을 통보 할 것 ● 신용카드사를 통해 직접 카드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복합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결제 대행사(PG사)의 결제 대행 서비스(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반드시 해당 PG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 매출이 발생하도록 요청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사업자의 사이트 내 판매 품목(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 입장권/신문/영화표 등 문화비 적용 상품, 문화비 적용 불가 상품)의 등록, 관리, 분리 결제 등을 위한 사이트 시스템 등 개편 ※ (2단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접수완료) 할 것 - (PG사) 신용카드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하위 사업자가 요청한 문화비 전용 카드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하고, PG사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하위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연계 · 등록하는 등 조치*

사업자 유형	조치 사항
복합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온라인 결제 대행사(PG사)에 결제 대행 서비스(개별(단독)가맹점번호³⁾)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반드시 해당 PG 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 매출이 구분 발생하도록 요청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사업자의 사이트 내 판매 품목(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 입장권/신문/영화표 등 문화비 적용 상품, 문화비 적용 불가 상품)의 등록, 관리, 분리 결제 등을 위한 사이트 시스템 등 개편 ※ (2단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접수완료) 할 것 - (PG사) 신용카드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하위 사업자가 요청한 문화비 전용 카드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하고, PG사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하위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연계 · 등록하는 등 조치* <p>● 신용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신용카드사에 기존 사용하는 카드 가맹점번호 이외 문화비 매출만 구분 발생하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카드 가맹점 번호를 추가, 분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사업자의 사이트 내 판매 품목(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 입장권/신문/영화표 등 문화비 적용 상품, 문화비 적용 불가 상품)의 등록, 관리, 분리 결제 등을 위한 사이트 시스템 등 개편 ※ (2단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접수완료) 할 것

- 1) 사업자가 결제대행 PG사를 통해 사업자에 부여된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사용, 결제)하고 있는 경우(이하 'PG사-사업자 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 2) 사업자가 결제대행 PG사의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하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
- 3) 사업자가 결제대행 PG사를 통해 사업자에 부여된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사용, 결제)하고 있는 경우(이하 'PG사-사업자 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③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위 ② 온라인 판매업자의 조치할 사항 참조

 - 앞선 기술적 조치사항 표에 적힌 “사업자의 **사이트 내 판매 품목~시스템 등 개편**”을 “입점 사업자의 판매 품목~시스템 등 개편”으로 봄
- 온라인에서 판매중개 플랫폼(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에 입점한 사업자와 구매자(고객) 간 문화비 적용 상품만을 판매 중개(단일 사업자) 또는 문화비 적용 상품과 적용 불가 상품을 같이 판매 중개(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도서분야 예) △복합(옥션/지마켓, 11번가, 위메프 등)
 - (공연티켓 예) △복합(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예) △복합(인터파크 등)
 - (신문 구독료 예) 예시 없음
 - (영화 관람료 예) △복합(네이버, 옥션/지마켓 등)

IV. 업계·기관 시행 협조 사항

② 사업자의 행정적 조치

- (조치할 사항) 사업자 유형별로 앞선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완료 후 한국문화정보원 (www.culture.go.kr/deduction)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할 것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 (기간) 기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분야 사업자는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 가능하며, 영화 분야 사업자는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접수 진행하며, 이후 수시 신청·접수 가능
- (절차 및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웹사이트(www.culture.go.kr/deduction)를 통해 신청·접수

구분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사업자, 국민
업무	접수 화면 접속, 간단 로그인 절차, 정보 입력 등	접수 검토	확정	사업자 기본정보 검색/조회
주요내용	사업자 관련 정보 입력,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참고 1] 「신청·접수 요령」 참조	입력 정보 및 증빙서류, 사업자 유형 등 대조 / 유형별 전용 가맹점 관련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 검토·확인	대조 및 확인 결과 이상 없을 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식별번호 부여	문화비 소득공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처리단계	신청·접수완료	검토 중	사업자 확정	사업자 확정

- 웹사이트 내 처리단계 안내 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정 시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문화비 소득공제 채널 메시지 등 발송하여 확정되었음을 알림

* 신청·접수를 완료한 사업자는 처리단계를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로그인 후 확인/조회에서 조회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식별번호는 확정시 자동 부여되며, 확정 일자는 등록이 완료된 일자로 처리 예정

Ⅳ. 업계·기관 시행 협조 사항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이하 유형 ④)의 행정적 조치

-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에 입점한 사업자 중 자신의 온라인 판매 쇼핑몰* 및 판매중개 오픈마켓**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만 해당 (가령, 오프라인에서 입점 사업자 자신이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오로지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이라는 판매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

* 자신의 온라인 판매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면 ②사업자 유형(온라인판매업자)에 해당, 앞에서 안내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접수

** ④사업자 유형(온라인판매중개업자)에 해당, 앞에서 안내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접수

- (예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문화비 상품을 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이외 상품을 결합판매(복합 사업자)하는 개별 사업자(소형 ◇◇서점, 문고, 공연기획사, 연극/무용/전통예술 단체, 박물관·미술관 등)

- 보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정확한 문화비 매출, 결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 위함이며, 특히 현금영수증의 경우 실제 판매자(입점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입점한 개별 사업자도 사업자번호 등의 기본 자료수집 필요하여 반드시 신청·접수 필요

* 오프라인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등에 입점한 실제 판매자(입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주체일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는 반드시 신청·접수 필요

- 판매중개 플랫폼에 개별 업체(사업자)가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이 입점 업체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책임소재 강화 차원에서도 유형④ 입점 사업자 신청·접수 필요

* 오프라인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등에 입점한 실제 판매자(입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주체일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는 반드시 신청·접수 필요

- 판매중개 플랫폼에 개별 업체(사업자)가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이 입점 업체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책임소재 강화 차원에서도 유형④ 입점 사업자 신청·접수 필요

*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매출, 결제 발생)에서 문화비 상품 이외의 타 품목 판매 등의 경우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해당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에게 사전기간에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하도록 적극 안내할 것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사업자는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행정적 조치에 해당 사항 없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변경사항 발생 시

- **(변경 사유) 신청·접수 시** 입력한 사업자 유형 구분 등 주요사항* 변경, 폐업 등 영업종료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함
 - * 사업자 유형 구분 변경(단일→복합), 사업자 주요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등)
- **(절차 및 방법) 기존 신청·접수 절차와 동일**
 - * (사업자 확정 전) 사업자 로그인 정보로 접속하여 변경 가능
 - * (사업자 확정 후)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콜센터(1688-0700)에 문의 후, 사업자 변경 확정함

확정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자료 활용

- **(일반인 대상) 지역(주소), 상호·법인명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여부를 검색 서비스로 제공**
 - **(결제대행사) 전용 가맹점번호 관리를 위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의 결제대행사인 PG/VAN사, 신용카드사 등에 필요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내 구현. 로그인 후 홈페이지 접근 및 가맹점 관리에 필요한 제한된 정보 검색 권한 부여
 - **(관계기관) 국세청(여신협회, 신용카드사 등)에 주기적으로 자료제출***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가 등록한 전용 가맹점 번호(카드 결제 단말기)를 제출하여 전용 가맹점 번호에서 발생한 매출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구축에 활용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자료 제출
- *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관련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 및 '별표4'에서 정한 자료집중기관(여신협회)에 제출해야 함

IV. 업계·기관 시행 협조 사항

③ 홍보, 안내 관련

기본방향 및 목표

- 문화비 적용 상품 판매(중개)·결제 관련 사업자 등의 제도 시행준비 소요 시간 단축 및 혼선 최소화
⇒ **사업자 대상 홍보·안내**
-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고객) 대상 홍보·안내**

사업자 대상 홍보·안내 및 시행 지원

- 관련 **사업자 대상**으로 안내매뉴얼, Q&A 자료집 배포
 - 특히, 신규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 확대 시행 시 결제대행사(신용카드사, PG사, VAN사,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에도 배포 및 협조 요청 공문 발송하여 협조 요청
- 사업자 신청 접수 및 안내 **콜센터(1688-0700) 운영(주말 제외)**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기술적, 행정적 조치사항 및 절차 안내, 민원 응대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및 안내 콜센터**
 - (3~12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사업자 대상 제도안내 및 민원 응대 중점
 - (1월~2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일반 국민, 근로소득자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여부 안내 및 관련 민원 응대 중점

확정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별 홍보·안내 협조 사항

- 사업자는 매장(시설), 온라인 웹·앱 사이트 등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용 식별표식(식별번호, 온라인 배너 등) 게시, 이용고객 안내*

* (예) 사업자 운영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카테고리(공제대상 품목 등록 및 판매, 결제 가능 / 전용 가맹점번호로 관리) 개편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장바구니 분리 결제, 배송방법 등) 고지, 기타 이용방법 등 안내

해당 사업자 유형	협조 사항	비고
① (오프라인 판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식별표식(스티커 등)를 판매 매장(시설, 티켓창구 등) 등에 부착, 게시 • 오프라인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결제단말기 예도 소득공제 전용임을 나타내는 스티커 부착 	VAN사 (단말기 대리점) 협조
① (오프라인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 병행 사업자 ② (온라인 판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문화비 적용 상품 판매 및 판매중개 웹·앱 사이트 등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배너 이미지 게재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정이 되면,

- 신청·접수 시 입력한 사업자 주소로 스탠딩형 QR, 리플렛, 스티커 등 홍보물 발송(한국문화정보원)
-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핸드폰 번호, 문화비 소득공제 카카오톡 채널로 사업자 등록 완료 확인 내용 발송(한국문화정보원)

Ⅳ. 업계·기관 시행 협조 사항

④ 사후관리 관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관리

- (유형 ①, ②, ③ 사업자)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되면, 즉시 신용카드사, 결제 중개사(VAN사) 또는 결제 대행사(PG사)에 아래 사항*을 알림으로써,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지속 관리되도록 함

*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완료 확정일자 등을 알려주어야 함

- (신용카드사 등*, PG/VAN사) 단일 사업자의 경우 △기존 가맹점번호를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관리하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 포함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분리, 추가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을 문화비 소득공제용으로 매출 처리 및 관리

* PG/VAN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및 '일반현금거래용' 현금영수증을 분리 발행하여 국세청 송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상품 판매 관련

- (온·오프라인 판매업자) 문화비 적용 상품 결제 전용으로 관리되는 가맹점(가맹점번호,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적용 불가 상품의 매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
 - 직접 판매 및 대행 판매하고 있는 상품 등의 판매, 결제 등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정기 점검 실시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문화비 적용 상품 결제 전용 가맹점으로 관리되는 가맹점(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적용 불가 상품의 매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점 사업자 지속 안내 등 관리

* (예) 입점 사업자가 기존에 책만 판매하여, 판매중개업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사이트 입점처리 하였으나, 고의로 유아용품, 공연 기념품, 식음료 등을 실제 판매함

모니터링 등 점검 실시

- **(사업자 공통)** 정기 또는 수시로 자신이 판매(또는 판매중개)하는 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한 상품인지 점검

-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상품을 매장(시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인지하는 즉시 시정조치*

* (예)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 또는 온라인 전용 장바구니 등에서 매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세청) 상시 문체부, 온오프라인 사업자, 결제대행사 등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사업자 점검 등 행정지도* 예정**

- 미신청 사업자 신청 독려,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 웹사이트 등)’ 판매, 매출 관리실태 등 점검

*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사업자 대상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음

- 점검 후 전용 가맹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매출에 대한 오류정정 등 시정이 필요할 경우 후속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별도 안내 계획

* 조세법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사업자가 문화비 적용 불가 상품을 고의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판매함으로써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Ⅳ. 업계·기관 시행 협조 사항

㉟ 신용카드사 및 결제 대행사 등 관련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 (신용카드사 등*, PG/VAN사 등) 온오프라인 사업자 등으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위해 가맹점 추가, 분리 요청 시 적극 협조

*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금융기관(은행), 전자금융업자 등

- 추가 가맹점명, 번호 부여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전용 가맹점번호 결제 전표(영수증)에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결제 전표 내 위치 및 표시 내용 등 상세사항은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 간 결정

- 추가된 전용 가맹점번호로 발생한 매출 정보가 신용카드사에 전송되어 문화비 소득공제 자료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추가, 분리 등이 추진 되는 만큼,
 - 추가 가맹 처리 시 사업자의 추가 가맹서류 간소화, 기존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과 동일 또는 이하 수준 적용 요청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내역 구분 및 자료 제출

- (현금영수증사업자) PG사/VAN사 등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화비 상품의 현금결제 내역을 반드시 구분하여 국세청 전송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3조 제3항에 따라 문화비 적용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C”로 표시

- 고시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 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 다만,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만 판매하는 단일사업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전송하지 않아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등 문화비 소득공제로 분류할 예정임.
- 한편 **영화 관람권을 판매하는 단일 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연말까지 전체 거래 내역을 문화비 소득공제로 분류할 예정임

[참고1] 사업자 신청·접수 요령 (서식 포함)

① 오프라인 판매업자일 경우 (사업자 신청)

※ 서식은 참고용이며,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웹사이트에서 접수·완료하여야 함

STEP 01. 사업자 유형 선택	영업형태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오프라인 ☞ 오프라인 선택 시 세부 영업 형태 선택 (복수 선택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카드 단말기 보유 <input type="checkbox"/> 카드 단말기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 온라인 선택 시 세부 영업 형태 선택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판매업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중개업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모두 해당 ※ 모두 해당 선택 시 온·오프라인 세부 영업 형태 선택 필수	
	판매 상품 선택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판매 여부 선택(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도서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박물관 <input type="checkbox"/> 미술관 <input type="checkbox"/> 신문 <input type="checkbox"/> 영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상품 판매 여부 선택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사업자 등록증 기준 문화비 적용 불가 상품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네" 선택 (사업자등록증 상 복합사업자)	
STEP 02.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 상호·법인명을 입력	
	대표자명	(예) 홍길동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입력	
	사업장 주소지	(예) 서울시 월드컵북로 400 한국문화정보원 6층 해당 주소지의 개인 주소지 여부 선택 <input type="checkbox"/> ※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입력 필요 ※ 해당 주소지가 개인주소지일 경우 개인주소지 여부 선택 필요 (선택 시 검색 시스템상 주소 정보 노출되지 않음) ※ 지점이나 별도 운영 박물관·미술관 등이 있을 경우 추가 필요	
	지점 보유 여부	지점명	(예) 한국문화정보원 서울 분점
	주소지	지점의 소재 주소지 입력	
STEP 03. 결제 정보 입력	카드사 가맹점명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의 매출, 결제만 발생하는 카드사 가맹점명 입력 (예) 한국문화정보원 ※ 카드사(VAN사)와 계약된 가맹점명을 입력	
	카드 단말기 보유 시	카드사/가맹점 번호 혹은 이용 PG사	VAN사에게 직접 카드 단말기를 계약하고 사용할 경우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만 결제되는 단말기의 카드사 선택 및 카드사별 분리한 가맹점 번호 모두 입력 (복수 기재 가능, 보통 9개 전업 카드사 이용) 예시) 국민카드 / 000000001234567 ※ 카드사별 가맹점번호 체계에 맞춰 입력 필요 ※ 입력된 카드가맹점번호 아래에서 발생한 매출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PG사가 제공하는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 PG사에서 제공 단말기 사용 선택 <input type="checkbox"/> - 이용하는 PG사 보기 선택 (복수 선택 가능)
	카드 단말기 미보유 시	현금영수증 사 업자명	카드 단말기 미보유 선택 시 현금영수증 사업자명 입력 ※ 현금영수증 사업자명의 경우 발행되는 현금영수증 확인 필요
STEP 04. 파일 첨부 필수 서류 첨부	필수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가맹 분리 서류 등 기타 서류 첨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과 적용 불가 상품 함께 판매 시 가맹분리 확인서 제출 - PG사 제공 단말기 사용 시 PG사 담당자에게 가맹분리가 되어 있는 내용(메일 등) 캡처하여 업로드	
STEP 05. 담당자 정보 입력 및 완료	담당자 성명		
	매장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업무용 이메일 주소		

② 온라인 판매업자, ③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일 경우 (사업자 신청)

STEP 01. 사업자 유형 선택	영업형태 선택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오프라인 선택 시 세부 영업 형태 선택 (복수 선택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카드 단말기 보유 <input type="checkbox"/> 카드 단말기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 선택 시 세부 영업 형태 선택 (복수 선택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매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매중개업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모두 해당 ※ 모두 해당 선택 시 온·오프라인 세부 영업 형태 선택 필수	
	판매 상품 선택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판매 여부 선택(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도서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박물관 <input type="checkbox"/> 미술관 <input type="checkbox"/> 신문 <input type="checkbox"/> 영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상품 판매 여부 선택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사업자 등록증 기준 문화비 적용 불가 상품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네” 선택 (사업자등록증 상 복합사업자)	
STEP 02.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 상호·법인명을 입력	
	대표자명	(예) 홍길동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입력	
	사업장 주소지	(예) 서울시 월드컵로 400 한국문화정보원 6층 해당 주소지의 개인 주소지 여부 선택 <input type="checkbox"/> ※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입력 필요 ※ 해당 주소지가 개인주소지일 경우 개인주소지 여부 선택 필요 (선택 시 검색 시스템상 주소 정보 노출되지 않음) ※ 지점이나 별도 운영 박물관·미술관 등이 있을 경우 추가 필요	
	지점 보유 여부	지점명	(예) 한국문화정보원 서울 분점
	주소지	지점의 소재 주소지 입력	
STEP 03. 결제 정보 입력	운영 중인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주소 입력 필요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판매하고자 신청하려는 온라인 사이트 입력)	
	PG정보 입력	PG사와 계약을 통해 결제 대행 진행	PG사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이용하는 PG사 모두 기재 필요
		카드사에 직접 가맹받아 결제 진행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만 결제되는 카드사의 카드가맹점 번호 모두 입력 (복수 기재 가능, 보통 9개 전업 카드사 이용) 예시) 국민카드 / 000000001234567 ※ 카드사별 가맹점번호 체계에 맞춰 입력 필요 ※ 입력된 카드가맹점 번호 아래에서 발생한 매출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STEP 04. 파일 첨부 필수 서류 첨부	필수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가맹 분리 서류 등 기타 서류 첨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과 적용 불가 상품 함께 판매 시 가맹분리 확인서 제출 - PG사 제공 단말기 사용 시 PG사 담당자에게 가맹분리가 되어 있는 내용(메일 등) 캡처하여 업로드	
STEP 05. 담당자 정보 입력 및 완료	담당자 성명		
	매장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업무용 이메일 주소		

[참고1] 사업자 신청·접수 요령 (서식 포함)

④ 온라인 판매중개플랫폼 입점 사업자 (사업자 신청)

STEP 01. 사업자 유형 선택	영업형태 선택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 오프라인 선택 시 세부 영업 형태 선택 (복수 선택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카드 단말기 보유 <input type="checkbox"/> 카드 단말기 미보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 ☞ 온라인 선택 시 세부 영업 형태 선택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판매업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중개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모두 해당 ※ 모두 해당 선택 시 온·오프라인 세부 영업 형태 선택 필수	
	판매 상품 선택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판매 여부 선택(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도서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박물관 <input type="checkbox"/> 미술관 <input type="checkbox"/> 신문 <input type="checkbox"/> 영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상품 판매 여부 선택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사업자 등록증 기준 문화비 적용 불가 상품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네” 선택 (사업자등록증 상 복합사업자)	
STEP 02.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 상호·법인명을 입력	
	대표자명	(예) 홍길동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입력	
	사업장 주소지	(예) 서울시 월드컵북로 400 한국문화정보원 6층 해당 주소지의 개인 주소지 여부 선택 <input type="checkbox"/> ※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입력 필요 ※ 해당 주소지가 개인주소지일 경우 개인주소지 여부 선택 필요 (선택 시 검색 시스템상 주소 정보 노출되지 않음) ※ 지점이나 별도 운영 박물관·미술관 등이 있을 경우 추가 필요	
	지점 보유 여부	지점명	(예) 한국문화정보원 서울 분점
주소지		지점의 소재 주소지 입력	
STEP 03. 결제 정보 입력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명 입력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주소 입력 필요, 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이트에 입점해야 적용 가능	
STEP 04. 파일 첨부 필수 서류 첨부	필수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가맹 분리 서류 등 기타 서류 첨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과 적용 불가 상품 함께 판매 시 가맹분리 확인서 제출 - PG사 제공 단말기 사용 시 PG사 담당자에게 가맹분리가 되어 있는 내용(메일 등) 캡처하여 업로드	
STEP 05. 담당자 정보 입력 및 완료	담당자 성명		
	매장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업무용 이메일 주소		

유형② 및 유형③ 사업자에게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PG사 (PG사 신청)

STEP 01.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 상호·법인명을 입력	
	대표자명	(예) 홍길동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입력	
	사업장 주소지	(예) 서울시 월드컵북로 400 한국문화정보원 6층 해당 주소지의 개인 주소지 여부 선택 <input type="checkbox"/> ※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입력 필요 ※ 해당 주소지가 개인주소지일 경우 개인주소지 여부 선택 필요 (선택 시 검색 시스템상 주소 정보 노출되지 않음) ※ 지점이나 별도 운영 박물관·미술관 등이 있을 경우 추가 필요	
STEP 02. 결제 정보 입력	PG사 카드 가맹점 번호 등록	카드사 가맹점명	(예) 케이지이니시스(주)
		신용카드사명	(예)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등 ※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한 카드사명 기재(2개 이상 복수 기재 가능)
		카드사 및 가맹점 번호 입력	(예) 167716252, 16759805 등 ※ 신용카드사별 추가, 분리한 전용 가맹점번호 기재(복수 기재 가능) ※ 엑셀자료를 통한 대량 업로드 가능
STEP 04. 파일 첨부 필수 서류 첨부	필수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가맹 분리 서류 등 기타 서류 첨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카드가맹점번호와 일반 카드가맹점번호가 나뉘져있음을 확인하는 자료 증빙 등	
STEP 05. 담당자 정보 입력 및 완료	담당자 성명		
	매장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업무용 이메일 주소		

[참고2]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 범위

① 도서의 범위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간행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 * 로 갈음할 수 있다.

도서의 범위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간행물**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하며 총 13자리로 구성,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

- (제외)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법에 의한 간행물(ISSN(977-)이 기록된 주·월·계간지 등 잡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 ▲판매가 아닌 대여되는 간행물

② 공연 및 공연 티켓의 범위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공연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공연 및 공연티켓의 범위

- **(공연)**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 이밖에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공연
- **(공연티켓*)** 위와 같은 공연을 보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것
 - * 동일한 공연(상품)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내 여러 티켓 권종이 존재
 - * 공연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공연티켓 비용에 포함

※ 공연티켓 범위 예시

구분(사례 및 주요내용)	공연티켓
① 지역대표공연예술제(축제) 등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 기간 중 축제/행사의 공식·부대 프로그램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독립된 공연티켓의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 (예: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000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페퍼00페스티벌, 인디음악축제 등)	포함
② 온라인 상 판매되는 공연티켓의 종류 중 공연티켓에 부가상품, 서비스 포함된 경우 -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의 형태로 판매되는 공연티켓(티켓에 공연관람 이외 부가 상품, 서비스 포함/ 예시 : 공연+프로그램북, 공연+CD, DVD, 공연+음료 등)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될 때, 아래 요건 충족시 공연티켓 범위에 포함 △ 상기 공연티켓이 동일한 공연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으로 판매되고 있고, △ 부가상품, 서비스가 불포함된 공연 관람만을 위한 공연티켓 권종도 함께 존재한다면 공연 관람이 주 목적이거나 보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 포함됨 (부가상품, 서비스가 없더라도 공연티켓 자체가 성립) ※ (예시) COOO뮤지컬 공연의 공연티켓 내 여러 개의 공연티켓 권종 판매* 하는 경우, 부가 상품인 프로그램북 제공이 포함된 공연티켓은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에 포함 * (공연티켓 권종) 요일별 공연티켓, 할인 공연티켓, R/S/A/B 등 좌석위치별 공연티켓, 특별 프로모션 공연티켓(당해 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포함)등	포함

[참고2]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 범위

※ 공연티켓 범위 예시

구분(사례 및 주요내용)	공연티켓
③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한 공연티켓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공연장, 예매처 등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 (예 :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은 스크린, △△ 사이트 온라인 콘서트 실황 중계 등)	포함
④ 호텔·관광 패키지(복합) 상품 내 공연프로그램이 포함된 입장권, 티켓 - 호텔 숙박, 지역 관광코스 여행, 식음료 등과 공연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입장권, 티켓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공연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으로 존재하지 않고 별도 입장권, 티켓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상기 패키지(복합) 상품 티켓, 입장권 판매 또는 결제가 호텔 등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여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서 제외 (예: OO호텔 야외 써머페스티벌, △△크루즈 디너쇼, 가수 이@@ 디너쇼 등)	제외
⑤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일반적인 축제/행사 티켓, 관람권 등 - 기존 티켓 예매처 웹사이트 등에서 주로 전시/행사 등의 메뉴(카테고리)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티켓, 상품 등이 대부분이 위 경우에 해당 (예: oo음식축제 입장권, oo꽃박람회 입장권, 초대권 등)	제외
⑥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 관람권(티켓) - 영화관에서 영화표의 한 형태로 판매, 결제되고 있어 제외(단, '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됨에 따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 관람권도 포함 (예: △△박스,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	포함
⑦ 온라인 중고티켓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서 구입한 중고티켓 - 이번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서 중고티켓 거래사이트 등에서 거래, 판매되는 중고티켓,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 공연티켓 등은 제외 - 이는 중고 공연티켓의 경우 판매 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책정된 가격이 과도하거나 가격이 비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판매가격을 알기 어려움을 고려한 것임 - 특히,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 중고 공연티켓 거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티켓 다량 구매 후 고액으로 되파는 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 불포함	제외

③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의 범위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의 범위

- (박물관·미술관) 박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범위 세부 기준(안)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등록 박물관·미술관	▶ 박미법 제16조(등록)에 따른 등록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관은 의무등록이나, 사립·대학관의 등록은 의무사항 아님	포함
미등록 박물관·미술관	▶ 박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으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박물관·미술관으로 기 분류 * 2003년부터 매년 문체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는 문화기반시설 현황(문체부 홈페이지 공개)	포함
	▶ 박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으며,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도 박물관·미술관으로 미포함 ① (소득공제 제공 희망관 → 소관 지자체) 총람 포함요청 ② (소관 지자체 → 문체부) 해당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체부로 총람목록 변경 요청(공문 혹은 메일) ③ (문체부) 최종 검토 후 반영	조건부 포함

[참고2]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 범위

※ 박물관·미술관 범위 세부 기준(안)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산업발전법(산업부 소관)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 박미법-전시산업법 간 목적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미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 · (전시산업법에 따른 전시회)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홍보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작품판매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영리적 성격의 화랑은 문화예술진흥법 상 박물관·미술관과 별도 시설로 구분 ▶ 동물원·수족관·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박미법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동법의 적용범위로 인정하는 시설(동물원, 수족관, 식물원)은 제외 * 시설 범위의 과도한 확장 우려, 해당 시설 소관 법률과의 관계 등 고려 	미해당

• (입장료) 박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 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것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비용(1일권) 인정

※ 입장권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비용에 포함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세부 기준(안)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전시	▶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 티켓 비용	포함
교육·체험	▶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박물관·미술관 교육·체험비용(1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적으로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되고, 해당 비용을 박물관·미술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만 소득공제 처리 가능(개별 강사, 학교 등에 지불하면 처리 불가) - '오디오 가이드' : 체험비에 포함하여 인정 	포함
	▶ 박물관·미술관 장기 교육·문화강좌(프로그램) 비용	제외
단체	▶ 단체 입장비용 및 체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카드 사용 또는 대표자(가이드 등)가 한 번에 대표 구매하는 경우 관람자 각 개인의 소득공제 처리 불가 	제외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세부 기준(안)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식음료	▶ 박물관·미술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입점한 식음료장(카페, 음식점 등)에서 지출한 비용	제외
문화상품	▶ 박물관·미술관 내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	제외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도록(ISBN 마크가 있는 도록에 한정하며, 도서로 분류되어 문화비 소득공제 인정) 구입 비용	포함
혼합권	▶ 온라인 상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류 중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 해당 부가상품·서비스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인정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주 상품이라는 것을 나타냄 ※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결제 필요	포함
	▶ 박물관·미술관 전시+교육·체험(1일권) 혼합 입장권	포함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기타 시설(예 : 관광지) 입장권 * 분리결제 시에만 소득공제 처리 가능	제외
	▶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	제외
멤버십 (회원권)	▶ 멤버십(회원권)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	포함
	▶ 멤버십(회원권)으로 입장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할 수 있는 상품 (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유형이 주로 해당)	제외

※ 다만, **소득공제 가능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빙 등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결제가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의 가맹점번호, 단말기에서 발생할 것,
- ☞ 국세청(여신협회 등)에서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확정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사업자’의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처리, 확정할 것

[참고2]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 범위

④ 신문 구독료의 범위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구독비(종이 신문 대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 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 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 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 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문 및 신문사업자의 범위

- (신문의 범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이 신문
 - * 인터넷신문은 대상이 아님
- (신문 사업자의 범위)
 -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 종이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 지국 또는 지사(지국에서 신문을 직접 배달 또는 보급하는 사업자)

⑤ 영화관람료의 범위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한 금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영화관 및 영화관람료의 범위

- **(영화관)** 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영화비디오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된 영화상영관
 -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상 상설 영화관으로 구분
- **(영화관람료)**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

※ 영화관람료 세부 기준(안)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영화관람	▶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	포함
	▶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교환·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트콘 등) 구매 비용 ※ 단,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식음료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음료 등) 구매 비용	제외
굿즈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	제외
영화 외 콘텐츠	▶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표 구매 비용 * ‘공연’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18년 7월~)	포함
	▶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표 구매 비용	제외
	▶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표 구매 비용 ▶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참고2]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 범위

※ 영화관람료 세부 기준(안)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대관	▶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 *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권 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를 의미	포함
	▶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행사 등)으로 대관 시, 대관 비용 ▶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	제외
결합 상품	▶ 영화관람권과 그 외 상품구매권(식음료, OTT, 굿즈 등)이 결합된 형태의 이용권(기프트콘 등) 구매 비용 ※ 단, 결합상품이용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비용 ※ 단, 멤버십(회원권, 구독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결제방식별 세부 기준(안)

구분	주요 내용 및 포함 여부
영화 관람권 및 예매권	▶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관람권 등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단,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트콘, 기프트카드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제휴사포인트 결제	▶ 제휴사 포인트(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제휴사 포인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부 사이트 결제	▶ 영화관 외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해당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관련

질의답변



I.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관련 Q&A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종이) 구독료, 영화 관람료(이하 '문화비')의 소득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Q.1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사용한 문화비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됨. 도서 구입비·공연 티켓비는 '18.7.1.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9.7.1. 사용분부터, 신문 구독료는 '21.1.1. 사용분부터, 영화 관람료는 '23.7.1. 사용분부터 적용됨.
-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문화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한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Q.2

-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음.

Q.3

어디서 구매하든지 관계없이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영화표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당연히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것이지?

- ▶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를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와 국세청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 수집·제공이 가능한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자로 확정하고 이들 사업자 명단 등의 현황 검색서비스 제공

** 영화표는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한 표만 해당 (Q33 참고)

-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대상임.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신문(종이), 영화표를 구매(개인 간 거래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되지 않음.

- ▶ 또한,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서 증빙으로 첨부 제출 가능한 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로 정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함

- ▶ 따라서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금액 확인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플랫폼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수집(전송)되어 국세청,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2-1. 도서 구매 소득공제 관련 Q&A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에서 말하는 도서의 기준은 무엇이며, 도서 구입 소득공제 관련 인정범위는 무엇인가?

Q.1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개인 간 거래 제외)이 포함됨.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됨.
-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일)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 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하여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Q.2

- ▶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임.
 -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됨.

Q.3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이 표기된 간행물 중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간행물이 있는지?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이 표기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Q.5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함.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임.
 - 하지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공제 불가. 중고도서 판매자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제공 가능.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Q.6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 상품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Q.7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2-2. 공연 티켓 구매 소득공제 관련 Q&A

Q.1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 즉 공연 티켓비에서 말하는 공연의 기준은 무엇이며, 공연 티켓비 인정 범위는?

- ▶ 공연법 제2조 제1항에서 공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8.>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 위 공연법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등' 공연의 장르(분야)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 영상(영화, 방송 등)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음.
- ▶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티켓(관람권, 입장권 등)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을 공연관람 사용금액, 즉 공연 티켓비라 함.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 티켓비에 포함됨.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온라인 상 판매되는 공연티켓의 종류 중 공연티켓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Q.2

- ▶ 동일한 공연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 형태로 판매되는 부가상품, 서비스를 포함한 공연티켓(예시: 공연+프로그램북, 공연+CD/DVD, 공연+음료 등)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될 때, 아래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
 - 상기 공연티켓이 동일한 공연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종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 부가상품, 서비스가 불포함된 공연 관람만을 위한 공연티켓 권종도 함께 존재한다면 공연관람이 주 목적이라 보이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
- ※ (예시) 000뮤지컬 공연의 공연티켓 내 여러 개의 공연티켓 권종* 판매 되는 경우, 부가상품인 프로그램북 제공이 포함된 공연티켓은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에 포함
- * (공연티켓 권종) 요일별 공연티켓, 할인 공연티켓, R/S/A/B 등 좌석위치별 공연티켓, 특별 프로모션 공연티켓(당해 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포함) 등
- 그러나, '호텔 숙박+공연 패키지'나 '지역관광+공연 패키지' 등의 복합상품처럼 구입 비용 결제가 공연티켓 예매처 등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아닌 호텔이나 여행사 등에서 결제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오프라인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MD상품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Q.3

- ▶ 공연 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품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Q.4

- ▶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공연장, 예매처 등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
 - ※ (예시)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은 스크린, △△사이트 온라인 콘서트 실황중계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 ▶ 추가로, 영화관에서 영화표의 형태로 판매, 발견하는 실황 공연의 경우(예 :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에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예: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등) 관람권,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Q.5

- ▶ 공연에 특화된 전문 공연축제/행사이거나, 축제/행사가 공연이 주목적인 경우 또는 공연이 축제/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 (요건)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유료 판매될 경우
 - ※ (예시)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000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페퍼00페스티벌, 인디음악축제 등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일반적인 축제/행사 티켓, 관람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Q.6

- ▶ 기존 티켓 예매처 웹사이트 등에서 주로 공연이 아닌 전시/행사 등의 메뉴(카테고리)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티켓, 상품 등이 대부분이 위 경우에 해당하며,
 - 상기 12번 질문·답변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제 입장권, 행사 티켓을 구입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도 공연비로 볼 수 없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 00음식축제 입장권, 00꽃박람회 입장권, 초대권 등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온라인 중고티켓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사이트 등에서 중고티켓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개인 간 거래로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Q.7

- ▶ 중고티켓 거래사이트 등에서 거래, 판매되는 중고티켓,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 공연티켓 등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는 중고 공연티켓의 경우, 판매 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책정된 가격이 과도하거나 가격이 비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판매가격을 알기 어려움을 고려한 것임.
 - 특히,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 중고 공연티켓 거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티켓 다량 구매 후 고액으로 되파는 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소득공제 적용 대상 공연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사적으로 거래되는 공연티켓, 중고 공연티켓에 대해서는 국세청, 신용카드업자 등에서 사용금액 확인 등이 불가능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온오프라인 가맹점, 매장(시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의미

Q.8

공연비 관련, 공연 단체 및 공연장별 유료회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료회원 가입비도 문화비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 공연단체 및 공연장별로 운영하는 유료회원(후원회 등 포함) 가입비는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음.
 - 대부분의 공연 단체, 공연시설(공연장) 등에서는 각자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는 다양한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회원제의 회원등급/유형에 따라 다양한 혜택(연간 티켓 가격할인, 티켓 추가제공, 안내책자 발송, 회원 전용라운지 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유료회원, 후원회비 등은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유료회원 가입비가 여러 혜택 제공으로 인해 특정 공연관람만을 위해 사용한 금액, 즉 문화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다만 유료회원 가입비가 순수하게 공연티켓만(MD상품제공/유로프로그램북/주차할인 등 제공 제외)을 구입하기 위해 전액 사용된다면 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2-3.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Q&A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서 말하는 '박물관·미술관'이란 무엇인지?
'입장료'의 인정 범위는?

Q.1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 제2조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실무적으로는 박미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박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으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박물관·미술관으로 기 분류된 시설이 이에 해당함.
- 박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박물관·미술관으로서 입장료 소득공제를 제공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소관 지자체를 통해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박물관·미술관으로 포함 요청해야 함.
- 참고로, 전시산업발전법(산업부 소관)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시회,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화랑', 동물원·수족관·식물원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입장료 적용 범위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을 의미하며,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비용(1일권) 인정.

※ 입장권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비용에 포함

- ▶ 좀 더 자세한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의 범위는 안내서(매뉴얼) [참고2]에서 확인 바람.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에 지출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Q.2

-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拂하는 비용을 의미함.
 - 그러나 장기 교육강좌를 등록하여 청취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강사의 강의 수강이 목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당일 입장에 유효한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정 가능함.

박물관·미술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입점한 식음료장(카페, 음식점 등),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Q.3

- ▶ 박물관·미술관에서 식음료장(카페, 음식점 등),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박물관 미술관 입장(전시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Q.4

- ▶ 온라인 상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류 중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 해당 부가상품·서비스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인정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주 상품이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임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 판매 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Q.5

-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외 타 시설에 대한 입장권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단, 박물관·미술관과 관광지를 분리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처리 가능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Q.6

- ▶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Q.7

- ▶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그러나 입장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상품을 결제(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 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Q15와 동일하게 적용됨.

박물관·미술관에서 전시기획사를 통해 기획전시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전시기획사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는지?

Q.8

- ▶ 만일 기획전시의 영수증 발행 명의자가 해당 박물관·미술관인 경우는, 해당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만 등록하면 됨. 그러나 영수증 발행 명의자가 전시기획사일 경우, 해당 전시기획사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안내서 사업자 유형 ❶ ‘오프라인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야 함. 그래야만 전시기획사가 활용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번호를 국세청에 전달하여 소득공제 처리가 될 수 있음.
- ▶ 따라서 전시기획사를 활용하는 박물관·미술관은 반드시 사전에 전시기획사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해야 함.

도서 구입비·공연 티켓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완료 이후,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사업자로 추가 등록 필요시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Q.9

-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완료되어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신규 등록 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1688-0700) 또는 한국문화정보원에 통보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로서 시스템에 추가 구분될 수 있도록 통보 조치 필요함.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2-4.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관련 Q&A

Q.1

‘신문 구독료’에서 말하는 ‘신문’의 기준은 무엇인가? ‘구독료’의 인정 범위는?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2항 제3호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제1호의 신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이 또는 지면 신문을 말함.

※ 신문법 제2조(정의) 제1호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 따라서 구독료 적용 범위는 위 법에 해당하는 종이 신문의 구독에 대해서 적용됨.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례는 무엇인지?

Q.2

- ▶ 법인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결제된 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의 구독료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근로 소득자의 개인 카드 또는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발행분) 처리된 종이 신문의 구독료인 경우에만 해당

‘신문’과 ‘신문 외 상품’이 결합한 복합상품(예시, 신문+태블릿PC/신문+화보집)으로 판매할 경우, 이러한 복합상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Q.3

- ▶ ‘신문’과 ‘신문 외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복합상품(패키지 상품)은 100% 종이 신문의 구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아니기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단, 종이 신문의 구독료와 신문 외 상품을 구분하여 결제할 경우 신문 구독료 결제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 가능.

신문지국이 신문 이외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복합사업자인 경우, 신문 이외 매출(전단지 등)은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있다면 카드단말기를 반드시 2개 이상 구비(가맹분리)해야 하는지?

Q.4

- ▶ 복합사업자라도 카드단말기는 신문 구독료의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한하여 사용하고, 다른 상품은 세금계산서만 발급한다면 1개의 단말기만 있어도 됨. 단, 신문과 다른 상품을 같이 카드결제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 단말기를 2대 이상 구비(가맹분리)하여야 함.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신문지국(지사)이 여러 신문사의 신문을 판매할 경우, 신문사 종류마다 카드단말기를 구비하여 결제해야 하는지?

Q.5

- ▶ 여러 신문사의 신문을 취급 판매하는 신문지국(지사)의 경우 신문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카드결제 단말기(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결제하면 됨.
 - 카드사(국세청)에서는 각각의 다른 신문사별 결제라도 동일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판매 신문사마다 카드결제 단말기를 구분할 필요 없음.

구독자가 신문지국(지사)이 아닌 신문사(본사)에 구독료를 납부한 경우 신문사(본사)가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Q.6

- ▶ 신문사(본사), 신문지국(지사) 상관없이 구독료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주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여야만 소득공제 처리됨.
 - 신문사(본사)에서 구독료를 결제하고 신문지국(지사)이 배달하여 이후 신문사와 지국 간에 비용정산을 하는 체계로 운영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는 주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Q.7

카드단말기 결제를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신문지국(지사)의 경우, 구독자에게 소득공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 ▶ 카드단말기를 미보유한 신문지국(지사)은 현금영수증 발급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독자의 신문 구독료 개별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 토스페이먼츠 (<https://taxadmin.uplus.co.kr>) 또는 금융결제원 (<https://www.kftcvan.or.kr>)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후 이용
 - *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 영상 참조
- ▶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여야 함.
 - 문화비 현금결제 내역을 다른 소득공제와 구별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결제 내역은 별도로 'C코드'를 부여하여 구별하고 있음. 문화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누락될 수 있기에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야 함.
- ▶ 사업장에 QR코드 안내판을 비치하여 QR코드로 찍어 결제 금액 입력하여 결제하는 '제로페이' 간편 결제 시스템 활용 가능(제로페이 고객센터 사업자 가입 문의 : 1670-0582)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일(2021.1.1.)이 지나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1.1 이후 결제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Q.8

- ▶ 시행일(2021.1.1.)이 지나서 사업자로 등록 완료되었을 경우, 등록 완료일 결제 부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됨. 즉, 등록 이전에 발급된 영수증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신문 매출이 100%로 발생하는 단일 사업자의 경우 1.1 결제분 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함.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2-5.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관련 Q&A

Q.1

영화상영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즉 영화관람료의 인정 범위는?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2항 제3호 나목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정의) 제10호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 따라서 영화관람료는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Q.2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굿즈 구매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님
 - 식음료, 굿즈(포토티켓/카드 포함) 구매 비용은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화관 외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굿즈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Q.3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외 콘텐츠(공연, 게임, 스포츠 중계 등) 관람을 위해 지출한 티켓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공연(녹화영상, 실황 중계) 티켓 구매 비용은 문화비(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 공연 관람 비용은 '18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중임
- ▶ 그 외 영화관에서 게임,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거나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구매한 티켓 비용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님
 - 영화관람과 무관하며, 영화관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Q.4

영화관 내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님
 - 영화관람과 무관하며, 영화관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Q.5

영화관람권(지류, 모바일, 기프트콘 등) 구매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영화 상영관, 상영시간, 좌석 등 실제 예매를 진행한 예매권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기프트콘, 지류(상품권 형식의 관람권) 관람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단, 기프트콘, 지류 관람권의 경우 현장에서 사용하여 영화표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시,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됨

*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입장권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Q.6

영화관람권과 이외 상품구매권(식음료, 굿즈, OTT 등)이 결합된 이용권의 경우, 해당 이용권 구매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결합상품 이용권 구매비용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님
- ▶ 단, 해당 결합상품 이용권을 사용하여 영화표(영화티켓)*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됨(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입장권

Q.7

영화관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비용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님
- ▶ 단, 해당 멤버십을 사용하여 영화표(영화티켓)*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됨(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입장권

Q.8

영화상영관 대관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개인이 영화관람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 ▶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행사 등)으로 대관을 하거나, 법인*이 대관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님

*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개인)를 대상으로 함

기프트콘, 기프트카드, 상품권으로 영화표를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Q.9

- ▶ 상기 결제수단으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시, 영화표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적용됨

* 각 결제수단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휴사 포인트로 영화표를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Q.10

- ▶ 제휴사 포인트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에 한하여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적용됨

* 제휴사 포인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화표를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Q.11

- ▶ 예매 대행 업체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소비자는 영화관이 아닌 예매 대행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바 해당 예매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관람권은 해당되지 않음)

II.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Q&A

영화제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표를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Q.12

- ▶ 영화제의 영화표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함

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 영화관 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화표를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Q.13

- ▶ 영화표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함
- ▶ 통신사멤버십 사이트 내에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의 경우 동일하게 통신사의 영화표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자가 등록하였을 경우 적용이 가능함.

영화표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받은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Q.14

- ▶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적용 가능함
- 단, 발급 후, 고객이 직접 해당 현금영수증에 대해 정보 입력 필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일(2023.7.1.)이 지나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하였다면 7.1 이후 결제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적용
될 수 있는지?

Q.15

- ▶ 시행일(2023.7.1.)이 지나서 사업자로 등록완료 되었을 경우, 등록 완료일 결제 부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됨. 즉, 등록 이전에 발급된 영수증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영화 관람료 매출이 100%로 발생하는 단일 사업자의 경우 7.1 결제 부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함.

Ⅲ.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3-1. 접수 전 준비사항

Q.1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 ▶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적을 수 있으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문화소비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문화 산업 분야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Q.2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위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영화 관련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신청·접수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있는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은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영화표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재하지 않음.
 - 다만,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영화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온·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문화비 지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 및 확보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문화비 자료 수집·제출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해 확정된 사업자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보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Ⅲ.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Q.3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 언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하는지?

- ▶ 문화비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한 후 국민, 국세청 등에 제공하고자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는 유형별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연중 수시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할 수 있음.

- ▶ 다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시행('23.7.1.)으로 인하여, 사전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함.

※ (영화관람료 사업자 사전접수기간) '23년 4월 ~ 6월 말, 사전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복합사업자가 제도 시행일 기준 이후 신청할 경우 제도시행일에서 등록완료일 사이 근로소득자의 결제분이 소득공제 누락이 될 수 있음.

Q.4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 사업자 신청·접수만 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되는 것인지?

- ▶ 각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시 입력한 정보 및 증빙서류, 사업자 유형, 유형별 전용 가맹점 관련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없을 경우 최종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함.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처리 단계(접수 완료/등록검토/신청반려/등록 완료)를 안내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되면 각 사업자에게 확정되었음을 알리고 있음(전자우편, 카카오톡 발송)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인증번호는 확정 시 자동으로 부여되며, 확정일자는 등록 완료된 일자임.

Q.5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요건은?

- ▶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인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여, 국세청(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증(고유번호) 필요

- ▶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사업자 유형별로 정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 확정된 사업자를 의미

Q.6

단일 사업자와 복합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 ▶ ‘단일사업자’는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도서 또는 공연티켓 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 신문의 구독료 및 영화관람료 매출이 100%이고, 이외 다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함. 기존 가맹점번호(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 ▶ ‘복합사업자’는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도서 또는 공연티켓 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또는 종이 신문의 구독료 또는 영화관람료 매출 이외 타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예시-도서) 도서와 잡지, 문구, 교구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교육비가 결제되는 경우
 ※ (예시-공연) 티켓과 MD상품, 프로그램북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매점이 있는 경우
 ※ (예시-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기념품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매점이 있는 경우
 ※ (예시-신문) 신문(종이) 이외 타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 (예시-영화) 영화표 이외 팝콘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영화 상영 목적 외 대관 등을 하는 경우

Ⅲ.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Q.7

복합사업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일사업자로 보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아래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복합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일사업자로 예외적 인정.
 - 도서 판매 사업자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에서 도서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증빙자료 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단일 사업자로 인정
 -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사업자는 연 매출액 7천 5백만 원 미만으로서, 증빙자료 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을 통해 단일사업자로 인정
 - 신문 사업자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에서 종이 신문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증빙자료 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단일 사업자로 인정

Q.8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영화표 판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하기 전에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 ▶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의 가맹점번호, 단말기 등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 신문, 영화표 매출·결제만 발생하도록 가맹 추가, 분리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해야 함
 - 기술적 조치는 사업자 유형(온/오프라인 사업자, 단일/복합 사업자, 가맹점번호 보유 형태 등)에 따라 상이함. 사업자별로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안내서(매뉴얼)' 또는 아래 Q12~Q15를 참고

Q.9

온라인 판매업자란?

- ▶ ‘온라인 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를 의미함. 온라인 판매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영화표와 이외의 기타 상품을 결합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회원사(위탁자)와 위 상품 판매와 관련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접 파는 경우가 대부분임.

※ (예시) 티켓 예매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방송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신문사 홈페이지 등

Q.10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및 입점 사업자란?

-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의미함. 온라인상에 상품 등을 거래·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가상의 영업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판매자(입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사업자임(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음)
 - ‘입점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서, 자신의 매장·쇼핑몰 등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타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입점 사업자로 구분됨.

※ (예시) ○○홈쇼핑에서 홈쇼핑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만, ○마켓 사이트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함

Ⅲ.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Q.11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단일 사업자 및 복합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 ▶ 단일 사업자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및 영화표만 판매하고 기존 가맹점번호에서 문화비만 결제(매출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신용카드사 등)을 추가(분리)할 필요 없음.
 - 다만, 매장(시설)이 본사 등과 동일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해 매장(시설)의 결제 및 매출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단말기)'에서 발생하도록 결제중개사인 VAN사(카드사 등)에 관리를 요청해야 함.
-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한 가맹점(신용카드사 등) 분리가 필수적임.
 - 카드사 등에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영화표 매출만 발생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추가(분리) 신청해야 함.
 - 또한 사업자의 결제시스템 개편 및 오프라인 단말기 추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Q.12

온라인 판매업자인 단일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 ▶ 단일 사업자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영화표만 판매하고 기존 가맹점번호에서 문화비만 결제(매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분리 처리할 필요 없음.
 - 다만, 결제대행사인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PG사가 카드사 등에 개설한 대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문화비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 처리될 수 있도록 PG사에 요청해야 함. 이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접수완료) 해야 함.
 - 또한, PG사는 카드사 등에 별도 개설한 대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하위 사업자(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구독료, 영화표 결제 사이트 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연계하는 조치를 해야 함.

Q.13

온라인 판매업자인 복합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한 가맹점(신용카드사 등) 추가(분리)가 필수적임. 가맹점번호 보유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1-1) 결제대행사인 PG사의 대표(또는 개별) 가맹점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PG사가 개설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PG사는 카드사 등에 PG사 대표 또는 개별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추가 분리하고, 하위 사업자들을 등록·연계하여 동 가맹점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PG사가 대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사용을 요청하는 하위 사업자를 등록연계할 때, 신청·접수(접수완료)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사이트에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카드사 등의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한 경우, 카드사 등에 '문화비 전용 소득공제 가맹점번호'를 추가 신청해야 함.
 - (2) 위 사업자 모두 반드시 사업자 홈페이지의 문화비 대상 판매 품목(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영화표)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결제시스템 개편 등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함.
 - (3) 위의 과정을 모두 수행 후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업자 신청·접수(접수완료)를 해야 함.

Q.14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고, 가맹 분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 ▶ 플랫폼만 제공하고 개별 입점 판매사업자들의 판매중개만 하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에서 카드 결제의 영수증은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이름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등록해야 함,
 -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조치사항과 동일함. 조치사항 중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 이외 상품) 결제시스템 개편 등'으로 보면 됨.

III.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위해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 단말기의 가맹점번호를 각각 분리(추가)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분리(추가) 완료한 후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도 되는지?

Q.15

- ▶ 반드시 현금영수증과 카드 등을 모두 분리(추가) 결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고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영화표를 제외한 다른 상품을 소량 판매하는데도 가맹 분리를 해야 하는가?

Q.16

- ▶ 각 문화 분야(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의 영세사업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Q7 참고)에는 예외적으로 가맹 분리 없이 등록 가능하지만, 영세사업자 조건 미충족 시 반드시 가맹분리하여야 함.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이외 품목을 현금으로만 판매할 시에도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해당 품목과 적용 제외 물품의 현금영수증도 결제정보가 분리 전송되어야 함. 마찬가지로 기술적 조치가 필요.

오프라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복합사업자의 경우, 가맹분리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없이 현금으로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제를 구분하는지?

Q.17

-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품목 결제 시에는 아래 내용 참고.

- ▶ 3개의 인터넷 발급 기관이 있는데, 현재 “토스페이먼츠, 금융결제원”에서만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 지원. 두 군데 중 한 곳을 선택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회원가입.
- ▶ 매 결제 건마다 수기로 등록하되 ‘발행목적’ 혹은 ‘지출구분’에서 꼭 ‘문화비 소득공제’ 체크하기.

※ (예시) 금융결제원 카드번 사이트(<https://www.kftcvan.or.kr/>) 접속 →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문화비 소득공제 체크 후 현금영수증 발급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오픈마켓 등)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개별 입점 사업자(이하 '입점 사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고, 가맹 분리를 해야 하는지? (온·오프라인에서 입점사업자 자신이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오로지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만 활용하는 경우)

Q.18

- ▶ 입점 사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실제 판매자(입점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이므로, 입점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현금영수증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함.
 - 또한, 입점 사업자가 판매중개 플랫폼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이용하여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영화표가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입점 사업자에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업자 책임소재 강화를 위해서도 입점 사업자의 신청·접수가 필요함.
 - 다만, 입점 사업자는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분리 등 기술적 조치는 필요 없음.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가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중개 사이트(오픈마켓 등)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신청·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Q.19

- ▶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되며, 추가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도 추가 선택한 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 '온라인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로 신청·접수한 경우, '입점 사업자 신청·접수 전용 화면'에서 별도로 신청·접수할 필요 없음.

Ⅲ.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이미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영화표와 그 외 상품을 별도의 가맹점번호로 결제하고 있는 복합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맹점을 추가(분리)해야 하는지?

Q.20

- ▶ 이미 카드사 등 가맹점번호를 분리하여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와 그 외의 상품을 분리결제하고 있는 경우, 가맹점 추가(분리)할 필요 없음.
 - 다만, 온/오프라인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에서 기존 가맹점번호를 문화비 전용 가맹점 번호로 전환·관리해줘야 하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정 후 카드사, 결제 대행사(PG사, VAN사) 등에게 알려줘야 함.

공연티켓 판매 없이 단지 대관만 하는 공연장 및 단체도 사업자 신청·접수가 필요한지?

Q.21

- ▶ 온오프라인 상 공연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단지 공연장 대관만 해주는 공연장, 공연시설 등 시설 운영자의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할 필요 없음.
 - 하지만 공연장, 공연시설 등을 대관하여 공연하는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등은 자신이 대관한 공연장·시설, 장소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공연티켓 판매 행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만약 공연단체, 기획사 등이 온오프라인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하고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함.

※ (예시) ○○뮤지컬컴퍼니(자체 공연티켓 예매창구 또는 온라인 예매사이트 등에서 공연티켓 판매)는 사업자 유형별 기술적 조치를 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야 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한 극장 및 영화상영관 중 대관도 하고 공연티켓, 영화표도 판매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하는지?

Q.22

- ▶ 온/오프라인에서 공연티켓 및 영화표를 판매하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해야 함.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박물관·미술관 전시기획사가 주요 온라인 티켓 예매처 사이트를 통해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위탁판매하고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하는지?

Q.23

- ▶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박물관·미술관의 전시기획사 등이 자체 온오프라인 티켓창구 또는 예매사이트 등에서 직접 공연티켓,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타 티켓 예매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박물관·미술관 전시기획사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은 해당 사업자명의로 발행될 수 있기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안내서 사업자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함.
 - 추가로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가령, 오픈마켓 등)에 입점하여 공연티켓,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면 역시 안내서 사업자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가 가능한지?

Q.24

-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 법인의 경우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 가능함.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에 따른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정의)에 따른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함.
 - 다만,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 전문예술단체 등은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가 불가능함.

III.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Q.25

납품이나 위탁 관련 사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가?

- ▶ 타 사업자에게 납품만 하고 해당 사업자명으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단, 납품받는 사업장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 품목의 결제 정보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주체가 당 사업자이면(영수증에 표기되는 사업자명이 당 사업자이면)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해야 함.
 -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판매하며, 영수증이 해당 사업자명으로 발급된다면 안내서(매뉴얼) 사업자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하면 됨.

Q.26

오프라인 대형 쇼핑몰 안에 입점한 서점의 경우 어떻게 등록하는가?

-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이 제공하는 단말기를 입점한 서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쇼핑몰의 주도로 먼저 가맹분리를 한 후 쇼핑몰(카드매출 소득공제용)과 서점(현금매출 소득공제용) 모두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해야 함.
 - 쇼핑몰 제공 단말기(또는 포스기)로 결제되는 카드 결제정보와 서점 명의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을 각각 소득공제 처리하기 위해서임.
 - 쇼핑몰은 오프라인 사업자, 입점한 서점은 플랫폼 입점 사업자로 신청하면 됨. 이때 입점 서점은 신청 시 입점한 플랫폼에 '**쇼핑몰 입점(오프라인)'으로 기록해줘야 함.
- ※ (예시) 롯데마트 ~점 입점(오프라인) -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판매하며, 영수증이 해당 사업자명으로 발급된다면 안내서(매뉴얼) 사업자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하면 됨.

Q.27

영화표 예매대행을 해주는 사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는가?

- ▶ 예매대행 사업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즉,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매 대행 영화표 결제 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예매대행업체의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어, 사업자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하면 됨.
 -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하면 됨.

III.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3-2. 접수 시 주요 문의 사항

사업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Q.1

- ▶ 공통적으로 필수 첨부 1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필수 첨부 2에는 부가세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부가세 관련 서류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 만약 이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업자라면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부가세 관련 자료의 경우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필히 최근 1년 치 자료를 올려야 함.
 - 복합 사업자의 경우 필수 첨부 1, 2는 위와 동일하게 첨부한 뒤, 온·오프라인 가맹 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타 첨부에 제출해야 함.
 - 신규 사업으로 인해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첫 부가세 신고 이전의 신규 사업자는 생략해도 무관함.

복합 사업자의 가맹분리 인증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Q.2

- ▶ 카드사나 결제대행사에서 사업자의 가맹 분리를 인증해줄 수 있는 자료이면 됨.
 - 메일을 화면담기(캡처)하거나 공문 형식이 될 수도 있음. 사업자명,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번호, 비소득공제용 가맹점번호, 결제대행사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단,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하려는 복합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및 비적용 신용카드 가맹번호를 모두 기입해야 하는가?

Q.3

-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카드 가맹번호에서 일어난 매출에 한해서 소득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만 기입해야 함.
 - 거래하고 있는 결제중개사인 VAN사(카드사)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Q.4

카드 결제 단말기가 없어 현금(이체, 현금결제 등)성 결제로만 거래를 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시 어떤 것을 기입해야 하는가?

- ▶ 카드결제 단말기가 없는 경우, 작성화면에서 사업자 기본 정보 입력 후 '현금영수증 사업자명' 기입란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해당 접수 사업자명을 기입하면 됨.
 - 이후 현금(이체, 현금 결제 등)성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 발급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매 건에 대해 직접 발행하여야 함.

Q.5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만 PG사, 티켓 예매처 등이 제공한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사용하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시 접수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PG사가 제공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하는 경우는 카드 해당 사업자가 안내서(매뉴얼) 사업자 유형 '오프라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됨. 이에 따라 각 신청 주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자 : 안내서 사업자 유형 '오프라인 사업자'로 등록, 이후 오프PG이용 선택
 - PG사 :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는 카드가맹번호를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
- ▶ 티켓 예매처 등이 제공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하는 경우는 '매뉴얼 사업자 유형 ④ 입점사업자'로 등록하면 됨. 이에 따라 각 신청 주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자 : '안내서 사업자 유형 ④ 입점사업자'로 등록
 - 결제대행사 : 해당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 처리되도록 전산 처리
 - PG사 : 티켓예매처에서 결제되는 카드가맹번호를 정보원에 등록
- ▶ 단, 해당 PG사, 티켓예매처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Ⅲ.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3-3. 접수 · 등록 이후 주요 문의 사항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되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관리를 위해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 등에 어떤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지?

Q.6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입점 사업자 제외)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PG사, VAN사 등) 등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확정일자’를 알려줘야 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고의로 문화비 적용 제외 상품을 고의로 문화비 결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 법령에 정한 제재가 있는지?

Q.7

- ▶ 상기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5항에 따라 국세청의 행정 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 조세범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온·오프라인 사업자, 결제대행사 등과 협력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의 상품 판매, 결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자 점검 등 행정지도를 상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후 전용 가맹점의 문화비 매출, 결제에 대한 오류 정정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후속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별도 안내할 계획임.

Q.8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소득공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단말기 등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가 아닌 다른 상품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직접 판매하거나 대행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결제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함.
 - 판매 대행하고 있는 위탁사(회원사)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 품목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해야 함.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종이), 영화표가 아닌 다른 상품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리해야 함.
 -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결제되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사업자는 시정 조치해야 함.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한 개인(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소득공제용 금액 확인서의 발급 및 구매자별 구매 정보를 보관하다가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국세청에 제공(전송) 할 수 있는지?

Q.9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직접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국세청으로 전송하거나, 소득공제 관련 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개인(근로소득자)에게 직접 발급할 권한이 없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서 증빙으로 첨부제출 가능한 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법적 증빙효력을 지닌 서류 발급 주체는 국세청, 신용카드업자*에 한정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함

Ⅲ.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련 Q&A

Q.10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오프라인 매장(시설) 및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용 식별표식(스탠딩형 QR,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게시해야 함.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시 입력한 주소로 식별표식(스탠딩형 QR, 스티커 등)을 발송할 예정, 온라인 배너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웹사이트 및 카테고리 개편사항 안내, 제도 적용 가능한 도서 구입비, 공연티켓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의 범위,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장바구니 분리·결제, 배송 등) 등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오프라인 사업자는 사업장(매장, 시설, 티켓창구 등)에 스티커 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결제 단말기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용 배너 이미지를 게재하고, 상품(도서, 공연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영화표)을 게재할 때 각 상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등 업체 사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입점 사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영화표 상품을 등록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는 절차·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입점 사업자가 소득공제 가능 상품임을 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IV. 신용카드사 및 결제 대행사 등 관련 Q&A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 판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및 분리를 요청할 경우, 카드사, 결제대행사(PG사, VAN사 등)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Q.1

- ▶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영화표 판매 사업자가 요청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추가 및 분리하여, 문화비 매출이 전용 가맹점번호에서만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 정보가 카드사 등에 전송되어 문화비 소득공제 자료 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며,
 - 추가 가맹점명, 번호 부여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전용 가맹점번호 결제 전표(영수증)에 문화비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결제 전표 내 위치 및 표시 내용 등 상세사항은 카드사 등과 결제대행사 간 결정
- 오프라인 결제중개사(VAN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및 단말기 설치 시 한국문화정보원이 발급한 단말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
- ▶ 아울러,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추가 및 분리 등이 추진되는 만큼, 추가 가맹 처리 시 사업자의 기존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율과 동일 또는 이하 수준으로 적용 요청

결제 대행사 PG사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Q.2

- ▶ 결제대행사인 PG사가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여러 온라인 사업자(하위몰)들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카드사 등에 PG사 기존 대표 가맹점번호를 추가 분리 요청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확보해야 함.
 - 개별 온라인 사업자들이 '문화비 전용 가맹점번호' 사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전용 가맹점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결제 대행사 PG사는 가맹분리 요청 사업자들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서 최종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Q.3

- ▶ PG사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번호' 연계 등 기술적 조치를 위해 해당 PG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하위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완료 또는 확정된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사업자 등 검색, 조회할 수 있음.

결제 대행사 PG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직접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닌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Q.4

- ▶ 온라인 결제체계의 특성상 PG사 대표 가맹을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 중개업자의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영화표의 결제는, PG사 명의의 카드가맹번호에서 발생한 결제 정보가 PG사 카드가맹점명과 함께 카드사 등에 전송되기 때문에,
 - 국세청, 카드사 등에서 정확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문화비 매출이 발생하는 전용 가맹점 및 가맹점번호, 전용 가맹점에서의 매출, 결제 금액 등 확인·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PG사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해야 함.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Q.5

-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 제3조 제3항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발생한 문화비 현금결제 내역을 구분(문화비에 해당하는 경우 "C" 로 표시)하여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V. 개인 근로소득자(구매자, 소비자) 관련

Q.1

일반국민들(근로소득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사업장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음.
 -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문화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일반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함.

Q.2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영화표를 구매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 ▶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구입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함.
- ▶ 따라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파악과 국세청/신용카드사 등에 관련 자료 제공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신청·접수를 받고 있음
- ▶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를 구매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15%)는 그대로 받을 수 있음.

Q.3

소비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임을 알리는 스티커 등 식별표식을 믿고 해당 사업장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알고 보니 소득공제 사업자가 아니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위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부터 결제한 것이 아니어서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이 문화비로 확인할 수 없기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어려움.
- ▶ 다만, 상기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과세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음.

V. 개인 근로소득자(구매자, 소비자) 관련

Q.4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를 구매했는데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 ▶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종이), 영화표 등을 판매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구매한 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였는데도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래 참고 바람.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할 때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문화비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됨.
 -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종이), 영화표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용카드’란에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기 바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구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도서 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4,700,000*1						
기타				300,000*2			

*1 : 5,000,000(신용카드 사용금액) - 300,000(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 4,700,000원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지출 금액 = 300,000원

Q.5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100만 원 구입했을 때 실제 환급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

- ▶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환급 받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환급세액만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움.
 - 다만, 국세청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여 환급세액 계산이 가능함.
- * 홈택스(www.hometax.go.kr)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계산하기

Q.6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가?

- ▶ 간편 결제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결제사별 문화비 소득공제 서비스 제공 여부도 전부 다름. 카카오페이, N페이 등의 주요 결제사에서는 적용 가능 하지만,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모든 결제사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사용하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고 결제하는 것을 권장함.

Q.7

휴대폰 소액결제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를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휴대폰(통신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발행일 2023년 5월

발행처 한국문화정보원

주소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1688-0700

누리집 www.culture.go.kr/deduction
